

- 인터넷에 거래되는 의약품은 모두 다 불법! -



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



수 신 회원 및 비회원사

(경 유)

제 목 표준통관예정보고서 승인 취소 건에 관한 수수료 부과 알림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약사법 제4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0조제2항과 화장품법 제5조 및 화장품 법 시행 규칙 제11조제9호에 의거 의약품수입 및 화장품수입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본 협회에 보고토록 한 바, 본 협회는 보고된 동 내용을 식약처, 각 세관에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통보 및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통관예정 보고 전송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.

3.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는 통관예정보고서를 발급 받은 후, 취소 전송 시 별도의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 처리하였으나 금년 3월부터는 아래와 같이 취소수수료를 적용하여 업무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오니 귀사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
- 아 래 -

내 용	구 분	현 재	조정 후	시행일자
발급 후 취소 건에 대한 수수료	화장품 완제	취소 건에 대한 수수료 전액 환불	발급 후 취소한 경우 수수료 환불 불가	2017.03월 취소건 부터 적용
	화장품 완제외		취소 건당 10,000원 (1만원 이하는 전액)	

끝.

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



협조
자 안상필 조종화

시행 의수협2017-02-135 (2017-02-28)

홈 페이지 <http://www.kpta.or.kr>

우 06164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, 1801(삼성동, 무역센터)

전화번호 02-6000-1831

팩스번호 02-6000-1850

e-mail jmkong@kpta.or.kr